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4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엄태영 · 박덕흠 · 이종배
박충권 · 배준영 · 박수영
서천호 · 김선교 · 박대출
권영진 · 박형수 · 김미애
이인선 · 이종욱 · 박정하
정점식 · 박상웅 · 고동진
조승환 · 서명옥 · 정동만
김성원 · 김소희 · 신성범
조배숙 의원(25인)

제안이유

지방소멸 위험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바이오 · 반도체 · 첨단제조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과 청주국제공항 · 중부권 교통거점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앙집권적 규제와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 ·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SOC·환경·관광·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법령 적용 특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중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법령상 ‘도·도지사·도의회·교육감·도조례’ 등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정함.

나. 지원위원회 설치 및 규제자유화 추진체계 구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 등록·심사·정비 등 규제혁신 절차를 도조례로 마련함.

다. 자치권·인사·지역인재 채용 등 자치역량 강화(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투표 청구요건 특례, 국가-지방 인사교류 확대, 지역인재 수습·임용 등을 규정함.

라. 자치재정 기반 강화 및 재정지원 특례(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주민참여예산, 균형발전기금, 국세 일부 교부 가능, 지방채 발행 특례,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매각 특

례 등을 정함.

마. 감사위원회 설치로 자치감사 독립성 강화(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위원 추천구조 · 임기 · 비밀유지 ·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

바. 혁신성장 거점 조성 종합계획 및 인허가 의제(안 제32조부터 제41조까지)

종합계획 수립 · 결정 · 심의회 설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준공검사, 조세감면 · 국고지원 · 예타면제를 규정함.

사. 특화지구 · 수자원 · 산림 · 문화관광 · 농촌 · 산업 · SOC · 탄소중립 특례 패키지(안 제42조부터 제133조까지)

특화지구 지정, 수자원 · 산림자원 활용, 역사문화권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농업 · 귀농어 지원, 첨단산업(바이오 · 반도체 · 양자 · 드론 · UAM · SW) 육성, 교통 · 물류 · 공항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를 규정함.

아. 감독 · 벌칙 · 과태료(안 제134조부터 제140조까지)

자료제출 · 감독 · 청문 · 위임, 위반행위 벌칙 및 양벌규정 · 과태료를 규정함.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충청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충청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혁신,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며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충청북특별자치도(이하 “충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충북자치도의 이용·개발과 보전 및 충북자치도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충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충청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충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충북자치도의 책무) ①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충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충북자치도의 도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 포함)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편 충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충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6조(충북자치도의 설치) ①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북자치도로 한다.

② 충북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③ 충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충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상
· 재정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 충북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충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사무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68조를 준용한다.

제9조(충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청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북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충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충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도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충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충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충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충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충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충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충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북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북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충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자치권 강화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와 충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

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충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6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충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

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충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자치재정

제1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 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재정건전화 책무) ① 도지사는 재정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충북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충북자치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충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충북자치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① 도지사는 충북자치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① 도지사는 충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

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충북자치도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충북자치도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채를 우선 인수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제24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25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충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6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도지사가 임명하려는 직원이 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에 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충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28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편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계획

제33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북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구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충북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자연생태·생명·환경 증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수자원·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4.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5.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충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북자치도에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충북특화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는 당연직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는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충북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종합계획의 시행

제36조(사업시행자)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37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 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
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
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
· 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
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4.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

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3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인 사업

시행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연관산업기관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특화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입주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충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충북자치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충북자치도 사업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
2. 여객 및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필요한 활주로, 터미널 등 청주국제공항의 공항개발사업
3. 충북자치도의 균형발전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4.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다목적 뚝구장, 충북아트센터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 조성 사업

제4편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지역 조성

제1장 충북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제43조(충북특화지구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북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충북특화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한다.

1. 호수진흥지구
2. 산림이용진흥지구
3. 문화지구
4. 투자진흥지구
5. 그 밖에 필요한 지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충북특화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특화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

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특화지구가 충북자치도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충북특화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충북특화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관리

제44조(수도법 등에 관한 특례) 충북특화지구에서는 「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환경관리계획(공공처리장으로 오수 유입,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식품접객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댐 저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지역지원사

업 대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하천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댐 저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호수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호수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호수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상지역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자연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호수관광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호수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5.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6. 자연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호수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호수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호수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호수진흥지구의 명칭 · 위치 · 면적
2. 호수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호수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 · 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 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 · 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 · 재해 대책 및 구조 · 구급 계획
8. 조성토지 등의 사용 · 공급 · 처분에 관한 사항
9.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0.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1.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8조(호수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호수진흥지구가 지정 ·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 수립 · 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 · 수립 · 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4.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5.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호수진흥지구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사도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하천수량 확보에 관한 특례) ①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물관리기본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전한 물순환과 수생태환경 보전 등을 위한 하천유지유량 등 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물관리기본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하천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0조(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해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를 도입 시 충북자치도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한다.

제51조(하천법에 관한 특례) 「하천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관할
구역 내 국가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자원의 활용과 휴양복지의 융화

제52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충북특화
지구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제12조와 제18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
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8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산지전용허가, 산지
전용신고의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북

특화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 가운데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에 필요한 시설

제53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산지난 개발을 최소화하고, 산림의 보존과 이용을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 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8. 산림이용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 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6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숙박시설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4장 중원역사 계승 및 문화관광 교류거점 조성

제57조(중원역사문화권에 관한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중원역사문화권에 관한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원역사문화권에 관한 계승 및 발전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원역사문화권의 위치·면적
2. 중원역사문화권 내의 자원 실태조사 및 연구 계획
3. 중원역사문화권의 자원의 보전과 활용 계획수립
4. 충북자치도와 인접 시·도 간의 공동연구 사항

5. 보존 및 활용 연구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8조(중원역사문화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은 도지사와 공동으로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확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 등 역사문화권 보존, 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충북자치도 산성 육성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도지사는 산재해 있는 충북자치도 산성의 발굴과 보전 등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충북자치도 산성의 발굴과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0조(충북자치도 산성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계획) ① 도지사는 충북자치도 산성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충북자치도 산성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충북자치도 산성의 위치·면적

2. 산성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활용 실태의 공동연구

3. 충북자치도 산성의 관리 및 이용 계획
4. 사업추진의 목적 및 방향
5. 사업 시행 방식 및 기간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1조(매장유산 발굴경비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충북자치도에서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관광진흥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북자치도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충북자치도에 우선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문화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의 해당하는 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해당하는 지역

2.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②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충북자치도 문화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2. 문화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문화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국가는 문화지구관리계획 및 문화지구조성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필요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지구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4조(문화환경 취약지역 등 우선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 충북자치도의 인접 시·도, 시·군·구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설치 또는 운영이 필요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65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

대

4. 그 밖에 충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6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시·군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 국제회의도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7조(외국인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운영 완화 특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충북특화지구에서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

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한 농촌생태계 조성

- 제68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충북특화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만 적용한다.

제69조(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지정의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지원 거점단지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충북자치도

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0조(스마트농업데이터 정보활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플랫폼 중 충북자치도에 관련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를 관할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농업인·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서비스 지원
2. 농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 그 밖에 충북자치도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1조(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활성화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2조(귀농어업인 초기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한 기간(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한다)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간 내에 충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

2. 귀농어업인 농어업 기술지도 사업

3. 그 밖에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3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충북자치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충북자치도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충북자치도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충북자치도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충북자치도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74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충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충북자치도 미래돌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충북자치도 미래돌봄특구(이하 “미래돌봄특구”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충북자치

도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충북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② 도지사는 충북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북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충북자치도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충북자치도 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지역은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역주력산업의 성장동력 촉진

제78조(공공기관 우선 유치 및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시 충북자치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로 합의하고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79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0조(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81조(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도지사는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지원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기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에 충북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 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복합단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 내 지역 주력 특화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말한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충청북도 내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복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85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지역 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7조(복합단지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교육 및 연수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복합단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88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①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 혁신적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9조(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①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 국가 또는 충북자치도는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제90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91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 활성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촉진법」 제3장에 따른 서비스산업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충북자치도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92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첨단과학기술단지
2. 연구산업진흥단지
3. 투자진흥지구
4.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제93조(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①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4. 바이오헬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바이오헬스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6.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94조(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방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3.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나.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제1항 이외에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충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6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7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의 허가·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8조(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충북자치도에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0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1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래첨단산업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연구소·기업 간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2.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및 채용

3. 취업 및 기업 지원

4. 해외 우수 기술 및 인력 유치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2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① 충북자치도의 경제자유구역에 서는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3조(대학 지원에 관한 특례) 충북자치도 내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위하여 겸임교원을 학기 단위로 임용하거나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

다.

제7장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망 확충

제104조(인접 자치단체간 간선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 국가와 충북자치도는 충북자치도의 시·군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5조(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지원) 국가는 수자원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이 중복 적용되어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

제106조(광역철도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충북자치도의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도시권 광역철
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광역철도의 대
도시권 범위를 초과하여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07조(복합환승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국가통합교통체
계효율화법」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내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8조(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국가와 충북자치도 및
충북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9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
한구역이 충북자치도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도지사를 통해 개발제한구
역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제 절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0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농지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충북특화지구 내 농림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1조(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2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북자치도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 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충북자치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충북자치도의 응급

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동 구축
4.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5.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충북자치도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3조(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동 구축) ① 국가는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도지사와 적극 협력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의 소방본부 또는 시·군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내용 및 위치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도지사는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⑥ 충북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들은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 발생 현장에서 가까운 충북자치도 내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심정지 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약물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응급처치 안내를 시행한 영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에 보관 후 기간 종료일에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스마트응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영상관독 및 응급처치 지원을 포함한 원격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⑨ 국가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충북자치도에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4조(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공동 활용)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을 설치하여 인접 시·도 및 시·군·구와 공동 활용하고 충북자치도는 관련 기술을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충북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구급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

1. 심장정지환자의 신속한 구조 필요 시
2.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 필요 시
3.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간 전원 필요 시
4. 응급환자 이송 중 영상의료지도 필요시

③ 도지사는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사업단을 충북자치도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관리 및 기술제공
2.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통계 관리
3.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운영 교육
4.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의 공동 활용 계획 수립
5. 기타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의 발전 계획 수립

④ 국가는 충북형 스마트응급의료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응급의료서비스가 확산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5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① 도지사는 충북자치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 내 일부 지역에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용 심의를 위하여 충북자치도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용 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은 충북자치도 내 유상운송 허용과 관련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는 충북자치도 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제116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7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따라 충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③ 국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금을 충북자치도로 이관하는 경우 국가도로철도망 계획에 따른 국비투자 계획과 관할구역 내의 수입금을 추계하여 그 규모를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충북자치도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을 신설·운용한다.

제118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충북자치도와 협의를 통하여 국고보조 등을 상향할 수 있다.

② 충북자치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생활환경·경관의 개선) ①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생활환경 개

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사회재난·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충북자치도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특례) 충북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에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충북특화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2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장 탄소중립, 환경친화 등 지속가능발전

제123조(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농지법」 적용의 특례)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24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충북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5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정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7조(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 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8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 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 개발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29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130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31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특례)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편 보칙 및 벌칙

제132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면 제36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33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청문) 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과태료)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충청북도의 폐지) 종전의 충청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충청북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충청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충북특별자치도지사(충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충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충청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충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충북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충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새로 위촉·임명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의 사무와 충청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충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충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충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충북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충북특별자치도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